

검토보고서

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

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봉 규

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1. 제안경과

- 발의년월일: 2024. 3. 6.
- 발 의 자: 김지훈(민) 의원 등 8인

2. 제안이유

○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「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추가 (제6조제3항)
 - 「장애인연금법」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응시수수료 면제
- 나.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(제8조)
 - 현행 7급 이상 응시연령 '20세 이상'을 '18세 이상'으로 하향 조정
 - 전 직급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통일
- 다.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(제15조의2 신설)
 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대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,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점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
- 라. 그 외 특수직급 등의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기준 정비 (별표4, 별표5, 별표6, 별표1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의회사무국

라. 입법예고 : 2024. 3. 7. ~ 3. 12. (6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■ 동 개정규칙안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,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위원회 구성및 운영을 통해 채용시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였고,

또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,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전 직급 응시연령을 통일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규칙안으로, 지방의회의 안정적 인사권 독립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
붙 임 관계법령

☑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
제64조(응시수수료)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교육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6. 22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1. 11. 30.>

- 1.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
- 2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
-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6. 22., 2016. 12. 30., 2023. 6. 13.>
- 1.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
- 2.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
- 3.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
- 4.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(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

제64조의2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)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 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. [본조신설 2023. 6. 13.]

☑ 「공무원 임용시행령」

제16조(응시연령)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교정·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22. 11. 15.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자치법규안명
 -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
- 나. 재정 수반 요인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왕은선